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Ⅱ)

계재 내용

1. 머리말
2. UR 농산물 협상과 현황
3. 최근의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4. UR협상의 타결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5. 맺는말

최 염 순
농림수산부 축정과

라. 농산물협상의 추진경과

UR협상은 4~5년 동안의 계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UR협상에서의 농산물협상은 전체협상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이 되고 있어 그간 농산물협상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주요협상추진결과를 간추려 보면 표3과 같다.

UR협상은 1986년 9월 폰타델에스테 선언을 통하여 협상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1989년 4월 제네바에서 협상의 중간평가회의시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목표·감축이행방법 및 의제 등이 정식 채택되었으나 농산물협상에서는 1990년 7월 드주의

장의 합의초안이 제시된 후부터 협상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10월 한국을 비롯한 미국·캐인즈그룹·유럽공동체·일본 등 주요 협상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 및 지원 현황자료(Country List)와 국별 농업감축계획(Offer List)이 제출된 후 수출입국간의 의견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요 협상국간에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의 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작업을 거쳤으나 협상타결의 선결조건이 되는 감축목표 등 본질적인 문제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1990년 12월 당초 협상기한을 앞두고 브라셀에서 열린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에서도 미국·유럽공동체·수입국들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표3〉 지금까지의 주요 협상 추진 결과

구 분	일 정	주 요 협 상 성 과
UR협상개시	'86.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협상(다자간무역협상) 개시 - 협상기본방향 설정
초기단계협상	'87. 1~'8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15개 협상그룹구성(14개 상품그룹 및 1개 서비스그룹)과 협상계획수립 • 전반기 협상진행 - 농산물교역의 문제점 및 원인파악 - 협상에 대한 각국의 기본방향과 제안협의
UR중간평가	'8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중간평가 각료회의 개최(캐나다 몬트리올) - UR 진전상황 평가 및 향후 협상계획 수립 목적 - 농업 보조금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합의 실패
	'8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중간평가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 개최(제네바) - 협상목표, 감축이행기간 및 방법, 의제, 이행계획 등 합의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 Non-Trade Concerns)을 고려하기로 결정
후속단계협상	'89.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목적 달성을 위한 각국 제안제출 및 토의(22개국 제출)
	'9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타결을 위한 의제별 실질협상 - 각국 제안 쟁점의 명료화와 협상타결을 위한 협상방식 합의에 협상력 집중
	'9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그룹 드류의장의 합의초안 제시 - 원칙적으로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감축하며, 모든 수입제한 품목의 관세화후 감축
합의초안 확정을 위한 TNC 회의	'9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그룹별 합의초안 확정 목적을 위하여 TNC 회의 개최
'90 하반기 협상 재개	'90.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호 및 보조금 감축원칙과 관련, 가트규정 개정 협의 재개 • 각국의 Country List와 Offer List를 가트에 제출 • 수출입국간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소강상태 지속
	'9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랏셀에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개최 - 미국·EC·수입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을 '91년초로 연기
'91 상반기 협상	'9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협상타결시한의 연장 및 재개를 공식결정(TNC회의) - 향후 협상의 의제와 기본방향에 관한 덴겔 사무총장의 제안서 공식 채택
	'91.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차에 걸친 비공식회의 개최로 기술적 쟁점사항 토의 - TNC회의('91. 4. 25)에서 농산물 그룹의장에 덴겔 사무총장 선임 • '91. 6 덴겔총장이 협상대안서(Options-Paper)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배포
	'91. 7. 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공업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국제교역에 관한 경제 선언 채택 - UR 협상의 연내 타결 노력에 원칙적 합의 (필요시 정상들이 협상에 직접 개입)
	'91.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C 회의에서 협상대안서에 대한 협상방향 설정 등에 대해 토의

부득이 금년 2월로 이 협상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지난 2월에야 다시 협상이 재개되어 7월말까지 수차에 걸친 공식 또는 비공식회의를 통해 정치적 타결에 앞서 각국의 입장정리와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농산물협상의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하여서만 집중적인 토의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의 협상은 모두 마치고 8월 한달동안 쉬었다가 지난 9월 16일부터 협상타결을 목표로 다시 협상이 속개되었다.

3. 최근의 농산물협상 동향과 전망

가. 농산물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농산물협상은 드류의장의 합의초안에 의하여 작년 10월 각국이 협상에서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개별 농업감축계획(Offer List)을 가트에 제출해 놓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 무대인 제네바에서, 또 어느

나라들은 서로 상대국을 오가며 쌍무협의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협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트에 제출된 각국의 감축계획을 비교해 보면 표4와 같다.

그리고 이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케인즈그룹과 유럽공동체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보이고 있어 협상초안의 골격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케인즈 그룹(호주·캐나다 등)은 협상 요소별로 국내보조·국경보호·수출보조를 각각 따로 구분하여 감축(Separate Approach)하자는데 비하여 유럽공동체는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내보조를 우선 적으로 감축하면 결과적으로 국경보호와 수출보조까지도 전체 감축(Global Approach)이 이루어진다는 자기 주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쟁점사항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5와 같다.

우리나라가 가트에 당초 제출한 농업감축계획에는 카트/BOP졸업과 관련, 잔존수입제한 품목을

〈표4〉 각국의 농업감축계획(Offer List) 비교

국 별	국내 보조	국경 보호	수출 보조
미 국	• '86~'88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91/'92부터 감축 • 품목특정적 지원: 10년간 75% • 품목불특정 지원: 10년간 30%	• '91/'92부터 10년간 75% 감축(관세 및 관세상당치/TE) - 이행기간후 50%의 최대수준 설정	• '87~'89평균을 기준으로 '91/'92부터 감축, 10년간 90% 감축 단,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91/'92부터 6년내 철폐
케인즈그룹	• '88년도를 기준으로 '91/'92부터 10년간 75% 감축 - 품목특정적 지원도 동일한 감축	• 무역액 가중평균 10년간 75% 감축(관세 및 TE) - 이행기간후 50% 상한 양허	• '87~'89평균을 기준으로 '91/'92부터 감축, 10년간 90% 감축
카 나 다	• '88년도를 기준으로 10년간 최대 50% 감축	• 10년간 50% 감축 또는 20% 상한 양허(TE) • 최대한 38% 감축(관세)	• 10년내 철폐
유럽공동체	• '86년도를 기준으로 10년간 AMS품목 30%, 기타 품목 10% 감축	• AMS감축에 따라 Fixed component 감축	• AMS감축결과에 따라 수출보조도 감축되는 효과
한 국	•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97년부터 10년간 30% 감축	• '91년부터 10년간 30% 감축	• 국내보조, 국경보호 보다는 급속한 감축
북 구	• '86 또는 '88기준으로 10년간 20~30% 감축	• 품목에 따라 5년간 10~30% 감축(TE)	• '96년까지 철폐 또는 5년간 60% 이상 감축
일 본	• '86년 기준으로 10년간 20~30% 감축	• 동경라운드시 일본이 감축한 수준으로 감축(관세)	
스 위 스	• '89 또는 '90년 기준, '91년부터 10년간 20% 감축	• 국내보조와 상용하는 감축(TE) • '91년부터 10년간 20%(관세)	• '89 또는 '90년 기준 10년간 30% 감축
멕 시 코	• '86기준으로 '91/'92부터 10년간 75% 감축	• 관세그룹 감축목표 수준인 33% 감축(관세)	• 철폐

〈표5〉 미국·케인즈그룹과 EC간의 주요협상 쟁점 비교

	미국·케인즈 그룹	유럽공동체 (EC)
<p>① 국내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보조액 (AMS) 역할/ 계산방식 • 감축/허용 정책 • 인플레이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 및 점검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정책별 감축을 추진 • AMS는 지원상당액·개별 품목별로 산출 • 감축대상 AMS중 가격지지역은 국내외 가격 차×가격지지물량 방식으로 계산 • 허용정책(Green)을 우선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대상정책의 요건강화 • 명목기준가격으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이행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조 및 보호수단을 AMS에 포함하고 이를 감축 수단으로 사용 • 실제예산지출액·품목군별로 산출 • 감축대상 AMS중 가격지지역은 국내외가격 차×총생산량 방식으로 계산 • 감축정책(Amber) 우선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대상정책의 요건완화 • 실질가격으로 기준
<p>② 국경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방식 • 보완장치 • 관세상당치 (TE)산출 • 시장접근 (TQ) • 관세상당치 (TE)양허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 전환 • 생산통제를 전체로 한 수입제한 규정인 가트11조2항(C)철폐 •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 보완장치는 잠정적 조치로 발동회수, 기간 제한을 하는 조건으로 인정 • 국내가격 : 도매가격 (소비자보호) • 국제가격 : 수입국은 실제수입가격(CIF), 수출국은 대표적인 시장가격(FOB) • 현행수준 시장접근 원칙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시장접근(MMA)은 관세분류 체계 별도 일괄적으로 부여 • 모든 TE의 양허와 TE최고한도 설정 • 일정공식(Formula방식)에 의한 TE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비관세 조치의 관세(종량세 형태)전환 • 가트11조2항(C)의 조치 • 보완장치는 항구적 조치로 발동회수·기간을 무제한 조건으로 인정 • 국내가격 : 생산자가격 또는 농가판매가격 (생산자보호) • 국제가격 : 실제수입가격 (CIF) • 현행수준 시장접근 원칙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시장접근은 품목군별로 부여 • 모든 TE양허 및 최고한도 설정에 반대 • Request/Offer방식에 의한 인하
<p>③ 수출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대상 • 약속방법 • 수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에 대한 직접보조, 정부 보유재고 처분에 따른 결손 • 수출물량 및 지원총액기준으로 감축 • 가트 11조2항(a)의 수출금지 및 규제조항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에 대한 직접보조, 정부보유재고 처분에 따른 결손, 수출금융지원, 가공품 수출과 관련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 수출보조금은 수입과징금 부과내로 전환 •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는 원료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이내로 제한 • 가트 11조2항(a)의 유지를 선호

1997년까지 모두 개방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여건이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비교역적 기능(NTC) 다시말해서, 국민식량안보·환경보존·지역균형개발·농업의 필수적 소득원과 농촌고용기능 및 가트 11조 2항(C)의 적용 등을 들어 표6 에서 보듯이 우리 농업의 생산비중이 큰 4대 축산물을 포함한 15개 농산물 즉, ① 쌀 ② 쇠고기 ③ 돼지고기 ④ 우유 및 유제품 ⑤ 고추 ⑥ 마늘 ⑦ 닭고기 ⑧ 보리 ⑨ 감귤 ⑩ 참깨 ⑪ 대두 ⑫ 고구마 및 전분 ⑬ 감자 ⑭ 양파 ⑮ 옥수수는 관세화를 통해 수입을 완전개

방할 수 없는 NTC적용 품목으로 주장하여 농업감축계획에서 제외시키고 표7과 같은 내용의 우리 계획을 가트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입장이 주요 협상국들에 부정적 시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점과 협상결렬의 비난을 벗어나고 현실적인 협상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년 1월에 당초 입장을 수정한 새로운 내용으로써 ① 쌀 등 최소한의 품목에 대해서 국민식량안보 등 NTC대상품목으로 개방예외 적용 ② 국가적 생산통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적용(가트 11조 2항(C)) ③ 국내농업보호수준

〈표6〉 비교역적 기능(NTC)적용대상 축산물의 품목

품 목	품 목 내 용	생산량	전체의 비중 (순위)	소비량	농가호수
		(87~89 평균)		(86~88 평균)	
		억원	%	천톤	천호
쇠 고 기	육우, 젖소, 기타 소, 쇠고기, 쇠고기 제조품	8,066	5.5(3)	147	737
돼지고기	돼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조제품	9,803	6.7(2)	373	254
닭 고 기	닭고기, 계란	3,553	2.4(8)	140	202
유 제 품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기타 우유, 버터, 치즈, 버터밀크, 응고유와 그립, 유장, 유당, 커어드, 대용유	5,325	3.6(4)	1,642	37

〈표7〉 우리나라의 농업감축계획 내용(당초기준)

항 목		내 용
국 내 보 조 (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축대상범위: 시장가격지지역(MPS)과 품목특정적인 요소 비용 보조금에 국한하여 감축 유예기간: 6년(BOP 졸업과 연계) 이행기간: '97년부터 10년간 최대 30% 감축 (NTC 대상품목은 제외)
국 경	시장개방 (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NTC 및 GATT 11조 2항(C)를 적용하여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관세화 대상품목은 수입자유화 예시년도에 수용 - 감축폭은 10년간 최대 30% 감축(NTC 대상품목은 제외)
보 호	시장접근 (TQ)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이 있는 품목: 현수준의 시장접근 인정('86~'88평균) 수입이 없는 품목: 국내 총소비량의 1% 이내 허용('86~'88평균)
수 출 보 조		국내보조, 국경보호 보다는 급속한 감축



유지 ④ 감축 대상품목의 유예기간 대신 장기간 감축 이행 기간 확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지금의 협상분위기로 보아 중요 축산물들이 NTC대상품목에 과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협상결과를 두고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나. 각국의 동향과 협상전망

작년 12월 브라질 각료회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농산물협상은 덴젤사무총장의 막후조정 등을 통하여 지난 2월부터 재개되었다. 무역협상위원회에서는 협상타결의 시한을 정하지 않은채 기존의 15개 협상 그룹을 7개 그룹으로 조정하였는데, 농산물협상에서 주목할 사항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은 뒤로 미룬채 주요 협상국들이 세부 기술적 쟁점사항의 문제해결에만 협상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동향을 보면 표8과 같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입장차이가 커 앞으로의 협상타결 시점을 전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랍은 각국은 협상진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5에서 보듯이 미국과 유럽공동체의 입장 차이가 서로 접근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들이 의도하는 의욕적인 세계농업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지난 7월 15일부터 3일간 런던에서 개최된 선진

〈표8〉 최근 주요 협상국의 입장과 동향

국가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5.24 미국의외에서 신속처리절차의 연장승인으로 앞으로 2년간 UR 협상추진 가능 — '92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금년말 또는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협상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 ·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케안그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EC 및 일본의 입장변화를 유도하는데 주력
케안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7 브라질 각료회의를 개최, 근본적인 세계농업개혁을 위한 선진공업7개국 정상외의 정치적 결단 촉구 · 농업분야에 상당한 성과 없이는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국경보호의 안정 관세화, 수출보조의 대폭감축과 궁극적 철폐, 개도국 우대인정 등을 강조
유럽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의 기존입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술적 쟁점사항 논의에 형식적 참여 — '91.7.15~17 농업각료이사회의(TNC) 개혁안에 EC가 당초 제시한 입장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 · EC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비판적,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여 개혁안 채택에 실패(계속 절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계 및 재계 일부에서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한 쌀시장 부분개방 논의가 계속 제기 · '91.7.8 가이후 총리는 쌀개방 불가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 '91.7.11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쌀에 대한 전면적 관세화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관세화 수용 불가입장을 제시하고 UR다자간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

공업7개국(G-7) 정상회담에서 UR협상의 진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폐막시 존 메이저 영국 총리가 발표한 경제선언을 통해 UR협상의 연내 타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밝히고 그는 선진공업 7개국 정상들이 『UR협상의 성공적 타결보다 세계경제의 장래에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문제는 없다』고 지적하고 『금년말까지 UR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강조한점

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기미를 다행히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도 올 들어 9년만에 모처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기가 서서히 되살아 나고 있어 앞으로의 UR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덴겔 사무총장이 제안한 협상대안서 (Options-Paper)의 세부안(1~4개안)에 대한 각국 간의 의견절충으로 단일안에 접근된다면 농산물협상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UR농산물협상을 현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면 최근의 선진공업7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

국의 노력과 협상지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부담, 그리고明年的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초(3~4월)까지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같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협상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미국과 유럽공동체간의 지금과 같은 의견대립이 지속된다면 협상은 내년 상반기를 넘어 미궁에 빠져 보다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어찌되던 오는 9~12월 동안의 이 협상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계속)

동물약품



도매전문

◎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물약품 도매상 양지가축약품

◎ 같은 약이라도 처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상담환영 (질병상담, 판매점 개설상담)
지방주문환영 (신속, 정확한 발송)



양지가축약품상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7-8
전 화 : (02)478-2208, 477-9332
F A X : (02)488-8627